

# 2026년 제1차 긴급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

2026년도 1차 긴급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회의일시 : 2026. 1. 9.(금)
- 회의방법 : 서면
- 심의결과

규칙개정 의결안건					보고안건	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부결	안건수	원안 접수
1건	1건	-	-	-	-	-

붙임 :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2026. 1. 9.

위원장  
위원

한 국 전 력 거 래 소  
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 
한 화 솔 루 션  
브 이 피 피 랩  
법 무 법 인 방 향  
서 울 과 학 기 술 대 학 교  
서 강 대 학 교

박 만 근  
심 윤 섭  
유 재 열  
차 병 학  
이 지 선  
전 우 영  
김 홍 석

[붙임]

##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심의결과 통지

안건명 :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결제 안정성 강화 및 부담 완화를 위한  
중개시장규칙 개정(안)

제1차 긴급 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6-1-01호
위원회 개최일시	2026년 1월 9일 (서면)
제안자	전력거래소 시장정산팀
제안내용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그린e 안심계좌* 도입에 따른 중개시장 채권양도 불가 규칙 개선</p> <p>* 대금결제 자동화 기능 도입 및 대금채권에 '신탁(信託)' 프로세스를 적용해 중개사업자-하위자원 간 안전한 대금결제를 보장하는 전용 금융시스템</p> <p>○ 전력거래 대금 지급시 재정보증을 면제하는 그린e 안심계좌 도입 과정에서 중개시장의 채권양도 불가 조항과 정합성 문제 발생함</p> <p>○ 특히, 중개사업자의 채권을 신탁사에 양도하여 신탁사가 결제를 대리하는 구조가 중개시장운영규칙 제42조 양도제한 규정과 저촉됨</p> <p>○ 따라서, 그린e 안심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, 전력거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재정보증을 면제하는 예외 추가</p> <p>&lt;참고. 중개시장운영규칙&gt;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<p><b>제42조(정산 및 결제방법) (중략)</b></p><p>⑥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, 공급인증서 거래 및 예측제도 참여를 통해 전력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</p></div>
토의내용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회의결과 : 원안가결</p> <p>○ 참석위원 과반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는데 동의함</p>

심의결과 : 원안가결

2026년 1월 9일

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위원장

박 만 근

